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23
------------	-----

제출일자 2012. 08. .

제 출 자 중구청장

1. 개정 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맞춤형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전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개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실제 개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건설도시국장 · 건설과장”을 “행정지원국장 ·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제19조 위원회 구성)
- 나.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등록된 자전거”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전구민”으로 변경하고 자구를 일부 정비(제26조(자전거 보험))

3. 근거 법규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 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입법 예고 결과 :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 07. 23 ~ 2012. 08. 13까지 공보 · 인터넷홈페이지 · 구 게시판 등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

(제151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 · 건설과장”을 “행정지원국장 ·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 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u>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u>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 4(생략)</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u>행정지원국장 · 자치행정과장</u> ----- ----- -----</p> <p>1 ~ 4(현행과 같음)</p>
<p>제2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p>	<p>제26조(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23)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제출자 : 2012. 08. 29(수)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8. 29(수)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9. 07(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조성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맞춤형자전거 보험」가입을 전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직제 개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 명칭을 “건설 도시국장·건설과장”을 “행정지원국장·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제 19조 위원회 구성)
나.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을 “등록된 자전거”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전구민”으로 변경하고 자구를 일부 정비 (제26조 자전거 보험)

5. 검토의견(행정자치전문위원 손중익)

- 본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조성을 위해,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고자 맞춤형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전구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써
- 주요 개정내용은
- ▶ 직제개편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건설도시국장·건설과장”을 “행정지원국장·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안 제19조)
 - ▶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등록된 자전거”에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전구민”으로 변경(안 제26조)하는 내용임.
-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 시 타구와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받아 주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